

韓日 FTA 協商的 問題點과 再協商 條件⁽¹⁾

金 都 亨

韓日 FTA 協商은 본 협상 초기단계에서 중단된 지 3여 년이 지났지만 재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5개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개시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부협상 즉 이해집단 간의 대립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이해집단 간 이해 대립은 물론 양국 간의 협상의제를 둘러싼 마찰구도를 정리하고 아울러 새로운 마찰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다. 이들 기초 위에 새로운 협상환경변화 즉 상대방의 입장변화를 감안하면서 再協商을 위한 條件을 제시한다.

비단 한일 FTA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서 수반되는 국내 피해업종에 대한 무역산업지원조치는 특히 오랜 산업정책의 경험에서 오는 공유한 한일의 경우 지원의 특정성, 장기화, 기존업체단체의 신규진입제한 행위 등으로 인해 資源配分의 效率性を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업종(중소 중견 부품소재 산업 등)에 대한 중장기 기술인력개발 등에 국한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을 엄정하게 관리하며 농수산 분야는 동아시아 전체의 수급과 환경보전 등에 중장기 전망 아래 생산과 가격을 공동관리하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가는 이른바 동아시아 共通農業政策 구상과 기존의 양국 農政改革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일 양국 기업 간 전략적 제휴의 장으로서 中國과의 광역적 연대를 통한 이해조정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가능한 각종 인프라를 공동 구축해야 함으로 밝혔다.

1. 序 論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상은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약 3년간 중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再協商을 위한 접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각각 여타국 혹은 지역과의 독자적인 FTA 전략을 구사하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²⁾ 이런 의미

(1) 본고는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2007. 2)에서 발표한 “한일 FTA 협상 대립구도와 재협상 조건정비 방향”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공개강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2) 한국은 협상 중단 직후 동시다발 FTA 추진전략을 구사한다는 명분으로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 EFTA, 미국, ASEAN과 협정을 완료(타이 제외)하고 캐나다, 멕시코, EU와 협상 중이며 중국과는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한편 일본은 한미 FTA에 인한 역외국의 무역전환효과를 우려해 조기에 한일 FTA에 응해 올 것이라는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 FTA 협상 과정,

에서 한일 FTA 정책은 양국의 對外政策 優先順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우려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국은 상호 견제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협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외각 두드리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에 한일 FTA는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상위권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기 협상 재개를 목표로 그간의 협상준비 및 본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이해대립구도와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개입으로 인한 새로운 조정코스트의 발생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변화된 협상환경을 토대로 국내외 마찰을 최소화, FTA 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2. 韓日 FTA 推進 背景 再確認

1998년 양국 수뇌 간에 이루어진 FTA 共同研究 합의에서 출발하여 어렵사리 FTA 협상 개시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는 다분히 WTO의 협상기동력 저하, 유럽과 북미경제권에서의 戰略的 FTA 증대로 인한 양국기업의 해외거점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 한일 양국 업종 간 競合性 증대와 마찰요인의 사전 제거, 中國 부상에 대한 공동대응, 외압을 통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국내개혁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이들 요인들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1. WTO의 機動力 低下와 戰略的 FTA 增大 壓力 強化

그동안 WTO 가맹국 수의 급증에 따른 각국의 교섭참가 인센티브 확보와 광범한 교섭분야 설정이 WTO의 기동적 교섭과 합의 형성을 어렵게 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확실히 과거 關稅引下가 중심이었던 교섭 당시와는 달리 교섭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도 WTO 교섭의 기동적인 합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동시에 관세인하가 상당수준 진행된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에 자유화를 요구할 경우 반대급부(추가적인 자유화)가 마땅치 않아 先進國 交渉力이 저하되고 동시에 WTO의 機動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역외국으로서의 무역전환효과를 최대한 해소하면서 한일 FTA 재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입장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멕시코, 칠레, ASEAN 회원국과 양자 간 협상, 및 ASEAN 전체와 협상을 완료(2007년 11월 발효 예정)하고 인도, 호주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FTA를 준비 중이다. 다분히 중국이 ASEAN과의 과감한 FTA를 통해 동남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데 대한 견제 의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力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2국 간 및 지역적 FTA 체결의 빈도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이후 체결된 FTA는 종래의 FTA와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즉 상이한 지역에 속하는 국가끼리 FTA를 체결하는 사례(미국과 요르단, EU와 멕시코, EU와 칠레 등), 상이한 지역에 속하는 FTA끼리의 통합(EU와 MERCOSUR 등)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도 多者主義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地域統合 움직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양자를 상호 보완해 가는 戰略的 通商政策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해졌다.

2.2. 韓中日 競合性 增大 속의 韓日의 相互補完性 低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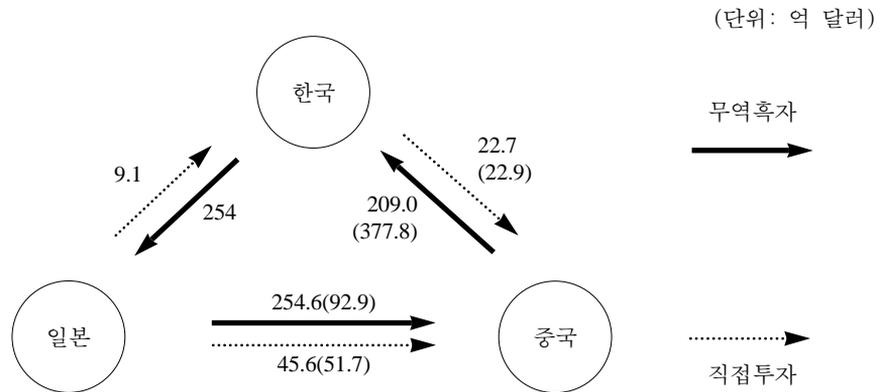
1990년대 들면서 韓中日 3국은 ASEAN과는 상이한 지역특성을 지니기 시작했다. 우선 3국은 거의 대부분 공업기반이 충실하고 제조업종 간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相互競合性은 높아진 반면 3국 간 무역의 相互補完性은 저하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ASEAN과는 달리 제조업종 내부의 상호보완성을 추구하는 이른바 水平分業 가능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소재, 가공조립 분야에서 후발국이 대형설비투자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면 언제나 선발국을 캐치 업, 선발국이 설비(과잉부채)를 매각·정리하더라도 그 만큼 후발국이 대형투자 구조를 유지·강화하면 시장상황은 그다지 바뀌지 않는다. 최근 韓日 構造調整 과정에서 보듯이 기업과 업종의 사업구조 개혁을 시장에 일임할 경우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비중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저하하는 경향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NIES, ASEAN 및 중국과의 相對的 補完性이 높고, 중국은 ASEAN, 한국 및 NIES보다 일본과의 상대적 보완성이 높으며, 일본은 중국보다 ASEAN, NIES 및 한국과의 상대적 보완성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중국(홍콩 포함)의 對日 輸出補完性이 일본의 對中 輸出補完性보다 낮은 결과 일본의 對中黑字, 일본의 對韓 輸出補完性이 한국의 對日 輸出補完性보다 높은 결과 한국의 對日赤字, 중국의 對韓 輸出補完性이 한국의 對中 輸出補完性보다 낮은 결과 중국의 對韓赤字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³⁾

동시에 한중일 比較優位構造는 점차 근접, 경합성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3국

(3) <그림 1>에 의하면 2006년도 한 해 중국은 홍콩을 제외하면 대일 수출보완성이 일본의 대중 수출보완성보다 높아져 대일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의 동액의 대한흑자로 메우고 있으며 반면 한국은 대일적자를 대중흑자로 메우고 있어 한중일 3국 간 다자무역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 1) 직접투자(대외투자-대내투자)는 2004년 수치. () 홍콩 포함.
 2) 2004, 2006년 평균환율은 각각 1달러=107.49엔, 116.89엔 적용.
 資料: KOTIS, 해외투자정보(한국수출입은행), 일본 財務省 対外・対内投資統計(2004).

〈그림 1〉韓中日 貿易收支와 直接投資 흐름 (2006年)

의 비교우위구조 차이에 의거한 보완성에 따른 貿易促進效果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초에는 거의 모든 IT관련제품에서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이후 비교우위를 급격하게 강화해 오고 있다. <表 1>에 의하면 2004년에 제3국 시장에서 한국제품은 일본수출품과 약 45% 중복되고 있으며 중국은 32% 중복되고 있어 양국의 일본추격이 치열해진 것은 물론이지만 3만 달러 이상의 고급품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 후발국이 선진국 기술을 습득, 비교우위 분야를 질서 있게 확산 시켜온 지금까지의 ‘雁行形態’ (flying geese pattern)와는 달리 중간단계를 생략, 비교우위를 급속하게 확립해 가는 ‘蛙飛形態’ (leaping frog pattern)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결과 한중, 중일 간의 기술집약형 산업내 분업은 확대되는 반면 한일 간 수평적 산업내 분업은 전반적으로 정체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 양국은 국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比較優位를 창출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相互補完性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3국 간의 균형적인 수평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협력과 이를 위한 경쟁환경을 정비·구축하고 국내산업조정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하나의 방법은 전통적인 貿易·投資自由化이며 다른 하나가 이른바 FTA와 같은 制度的 統合이다.

지금상태로는 한중일 3국 간 상호보완성이 저하하고 아시아시장에서의 구미세의 선점에 개별대응은 역부족인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시장통합을 통해 規模經濟, 製品差別化를

〈表 1〉 第3市場에서의 日本과 競爭國 間 輸出品 重複 比重(%)

3국시장수출품 부가가치 지표	경쟁국 명	1994년	1999년	2004년
1만 달러 이상	중국	8.6	15.8	32.3
	싱가포르	16.3	17.4	17.2
	한국	15.7	23.9	32.5
	홍콩	16.6	18.7	24.2
	타이	4.8	7.2	na
	말레이시아	12.4	4.7	4.2
	필리핀	na	5.3	10.4
	인도네시아	1.7	2.7	3.4
2만 달러 이상	중국	5.8	13.5	29.7
	싱가포르	14.3	16.5	16.5
	한국	13.0	22.0	30.9
	홍콩	14.0	17.2	23.6
	타이	3.6	5.9	na
	말레이시아	5.1	10.9	11.5
	필리핀	na	2.8	2.2
	인도네시아	0.8	1.8	2.5
3만 달러 이상	중국	0.9	2.9	15.3
	싱가포르	3.2	4.2	5.0
	한국	2.4	7.7	8.1
	홍콩	3.6	7.3	11.2
	타이	0.4	0.6	na
	말레이시아	1.1	1.0	1.5
	필리핀	na	0.1	0.2
	인도네시아	0.1	0.2	0.4
전체	중국	9.3	16.7	31.8
	싱가포르	16.8	17.9	31.5
	한국	16.3	23.8	44.9
	홍콩	16.9	18.8	46.9
	타이	5.4	8.2	na
	말레이시아	7.3	12.8	22.4
	필리핀	na	3.7	7.0
	인도네시아	1.8	3.2	11.4

資料: 財 財法人産業研究所(2006), 經濟産業省(2005).

달성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3. 日本의 通商·地域政策 大轉換

일본은 1990년대 전반까지는 농산물자유화, 역외국차별, 특히 미국의 극심한 반발이라는 국내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地域協定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은 지금까지 매우 신중했던 지역협정과 2국 간 협정을 대외경제정책의 틀 속에 포용하면서 종래의 貿易政策의 大轉換을 시도한다. 그 배경으로서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95년 출범한 WTO 이후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신규분야에 관한 다자간 교섭의 난항에 더하여 일본이 실질적으로 출범을 주도하고 가입한 APEC 역시 당초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胎生的 한계를 지닌 채 아시아 금융위기 시 응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둘째,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각국이 UR협상 타결로 간신히 얻은 貿易·投資自由化 불씨를 살려가기 위한 차선책으로서 地域貿易協定을 이용하면서 다국적기업의 효율적인 세계적 입지선택을 통한 경제연대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다. 그 결과 일본기업은 역외국으로서 무역전환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동아시아 주변국은 아시아經濟危機와 극복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결속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대아시아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일본 역시 장기불황 탈출을 위한 최후의 정책보루가 아시아수출시장 유지·확대였다.

일본은 현재 經濟連帶協定(EPA)이든 自由貿易協定이든 우선 경제관계가 긴밀하지만 關稅 및 非關稅障壁이 높아 일본경제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 중 일본의 민간기업이 설정한 우선순위, 관계강화를 통한 여타 통합경제권에의 효과적 대응 정도, 정치적 안정성과 통치능력 및 민주화 정도, 일본의 민감품목의 무역량과 상대국의 협정체결 의지에 더하여 자국의 교섭처리능력, WTO교섭진행 상황, 여타 지역·국가 간의 FTA 진척상황 등 경제적, 지리적, 정치외교적 기준 및 실현가능성 등의 전략적 판단기준에 따라 협정 상대국 혹은 지역을 선정해 가고 있다.⁽⁴⁾

이에 일본은 거대생산·소비시장인 동북아와 그 외연을 확보하면 국내 투자수익률 저하 방지, 중국의 동남아, 인도양 진출을 제어, 확대 EU, FTAA에 대한 견제와 균형자로서

(4) 이렇게 본다면 최근 인도, 호주도 포함하는 거대 아시아자유비즈니스 경제권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 ASEAN, 인도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다. 동아시아 FTA 추진을 위한 대상국 선정에 있어 국제정치외교적 비중이 한일 FTA 협상개시 때에 비해 다분히 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 위상제고를 통해 세계 3국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寡占생산체제 유지, 글로벌경쟁력 확보 등의 經濟的 利益 이외에 대아시아 외교상의 戰略的 柔軟性을 확보하는 교두보로서 韓國을 EPA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3. 協商 이슈別 및 國內 業種 間 利害 對立

3.1. FTA 5個 基本原則 合意

1998년 10월 양국 정상 간 합의(“21세기 신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와 1999년 3월 행동계획(“한일 경제협력 Agenda21”)에 의거하여 FTA에 관한 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학계 공동연구, 업계 비즈니스포럼을 거쳤지만 필요성만을 강조할 뿐 협상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다가 産官學 공동연구회(2002. 7~2003. 10)를 통해 한일 FTA 기대효과와 추진방안을 검토한 직후 첫 협상은 2003년 12월 개시되었으나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동안 한일투자협정, 양국 국민, 기업, 단체내부의 FTA에 관한 인지도 제고, 정부내부의 매우 보수적인 관세양허안과 WTO뉴라운드 타결을 기다리는 일부 규범과 를 관련 초안 마련 이외 가시적 성과는 전무하다. 여전히 양국 관련업계는 물론 동종 업종의 단기, 중장기 수급계획 등에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정부부처 마저도 ‘總論贊成 各論反對’의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당초 총론찬성에서 총론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總論贊成의 근거는 ① 다자간 룰의 보완, ② 동아시아역내 구미기업과의 효율적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국기업관련 업종의 규모경제 달성, ③ 여타경제권에서의 시장확보를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 등이다. 各論反對는 ① WTO 뉴 라운드 행방 주시의 필요성, ② 양국기업 간 전략적 제휴 증대와 해당 업종의 장기효율성 제고에 대한 상대적 피해업종의 확신 결여, ③ 농수산 분야 추가개방 반대와 이를 자기업종의 보호막으로 활용하려는 비농업분야의 政略的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기존의 한일 FTA의 기대효과 측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관세, 비관세조치 철폐 및 양국 간 협력강화 등으로 무역, 투자는 증대될 것이지만 한국의 기술혁신으로 생산성향상이 없는 한 대일무역적자는 불가피하다. 기초연구결과⁽⁵⁾에 의하면 실질경제성장

(5) KIET(1999) 및 KIEP·IDE(2000) 참조.

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對日赤字 규모는 최소 34억~최대 60억 달러로 확대된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對韓投資 활성화, 이를 통한 국내구조개혁, 설비투자 및 생산성 향상이 전제된다면 대일무역흑자는 최대 64억 달러까지 가능하다.⁽⁶⁾

이는 양국 간 관세율 格差, 일본의 자국 부품·제품 선호 경향 및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고려할 때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수출확대를 기대하기 곤란한 반면 일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전기전자 부품, 고급기계류, 핵심소재, 고급승용차 등의 수입증가로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FTA에 따른 貿易創出效果보다는 貿易轉換效果가 크다.

아울러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그동안 8% 내외의 關稅로 보호받아 오던 국내 중소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일본의 고급부품소재 수입확대로 연구개발 혹은 상품화 직전 단계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소싱 확대로 과거처럼 부품기업과 완성품 제조기업 간 연계가 취약해졌기 때문에 관세철폐는 部品조달선을 일본으로 전환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일 간 産業構造調整이 진행되면서 일본은 고가·차별화 제품, 한국은 중저가·범용제품의 수직적 산업내분업 체제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1억 7천만 인구, 4조 6천억 GDP(세계 GDP의 17%)의 단일 시장 형성에 의한 規模經濟 실현으로 한일역내에서 세계최적생산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등장, win-win 원칙에 의거한 戰略的 提携 강화, 구조조정과 개혁, 경제활성화에 의한 産業競爭力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의 경영자원 보강으로 3국 시장 공동 진출, 하이테크분야의 세계적 기준설정, 다자협력의 장에서의 지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일 FTA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WTO+ α 의 선진 통상 룰 설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① 包括的(농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의 자유화 추진), ② 總合的(고도의 투자 룰 정비,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분야 자유화,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정부조달, 과학기술, 운송, 인력이동, 중소기업 등 광범한 분야 협력 추진), ③ 實質的(모든 분야에서 의미 있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 주요수출품의 관세철폐 이

(6) 사실 FTA 경제적 효과에 관한 수많은 정량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 고용, 무역수지, 후생 등의 변수 값이 상호 상반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산과 고용의 경우 어느 계층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는가는 완전히 분석자의 판단에 의한다. 따라서 이는 매우恣意的인 이해대립 조정이라 볼 수 있다.

행기간 단축), ④ 互惠의(양국의 지속적 성장, 공동번영, 협력강화), ⑤ WTO+ α (WTO규범과의 조화 및 지역통합 모델케이스 제공)의 5個 原則에 합의한 것도 바로 상기와 같은 중장기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효과는 가시화되기 전에는 좀처럼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며 실제 다수의 수혜계층·업계의 목소리는 잠잠한 반면 피해계층·업종은 소수일지라도 때로는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변모하여 노동, 자본, 기술의 국내외 이동을 제약, 효율적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결국 社會的 費用을 키우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 FTA 협상의 주요 이슈별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재점검하고 협상이 지연될 경우 초래될 우리기업의 피해를 정확하게 가능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3.2. 이슈別 韓日 間 利害 對立⁽⁷⁾

우선 한일 FTA 본 협상이 좌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⁸⁾ 한일 FTA 체결의 결과 한국 측은 ① 한일 간 무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② 국내 제조업 기반이 와해되는 것은 아닌지, ③ 일본의 非關稅障壁의 존재, 농수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지연 등으로 인해 한국의 對日輸出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④ 한국의 산업피해 구제와 보상 메커니즘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등을 우려하고, 일본 측은 ① 일본의 대한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에 대한 한국 측의 미온적 자세, ② 한국 측의 일본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실질적 개방, 인력이동 자유화 요구, ③ 한국 측의 고급기술 이전과 산업피해 補償 요구, ④ 한국 측의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등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직접적으로는 일본 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반대, 한국 측의 상품분야(특히 자동차분야) 전면개방 반대 등 상품분야에서의 이면 협상좌절이 여타분야 협상진입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본 협상은 이미 중간협상 단계였던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에서의 아래와 같은 협상 이슈별 양국 간 입장차이를⁽⁹⁾ 조율하지 못한 채 결렬된 것이다.

첫째, 關稅 분야에서 한국은 일부 제조업, 일본은 농업분야 등 민감 분야 피해가 크므로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는 하지는 않지만 관세철폐 이행기간 설정과 양자 간 産業被害救濟 조치 등 소요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 제조업 전 분야의 관세철폐를, 한국은 일본의 농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의 전면철폐를

(7) 김도형(2007b, pp. 296-300) 인용.

(8) 여기서는 협상 중단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독도영유권, 과거사 문제 등 경제외적 요인을 무시한다.

(9) 김도형(2003b) 참조.

주장하고 있어 당초에는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관세양허안을 제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제조 수입액 가중 전산업 평균 관세율은 일본이 2.7%, 한국은 9.2%로서 한국이 3배 이상 높다. 업종별로는 일본은 수송기계, 전자, 기계 등은 거의 무세인 반면, 농산물을 비롯한 革製品, 섬유 등은 관세율이 높다. 한국 역시 농수산물 관세율이 높고 제조업에서도 섬유, 가죽 등을 비롯해 수송기계, 화학, 기계 등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5% 이상이다.

관세율별 수입을 보면 한국은 無稅輸入 비중이 28.3%, 일본은 57.3%로서 현재 우리의 대일수출의 절반 이상이 무세이다. 한국의 관세는 10% 이하에 전체의 70%가 몰려 있으며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율이 8% 내외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10% 이상 高關稅 품목비중은 한국이 1.7%인 반면 일본은 3.0%이며 농수산물, 화학제품 등에서 非從價稅가 많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關稅率이 일본에 비해 높고 특히 주요 제조업에서는 일본은 거의 無稅인 반면 한국은 상당 수준의 關稅가 남아 있어 상품양허 부문에서는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시장개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제조업의 일부품목에서 한국 이상의 高關稅를 유지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경우 쌀은 관세율이 500%에 달하고 한국의 관심품목인 김, 정갱어, 고등어, 다시마 등 9종의 어패류는 輸入割當制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의 요구대로 고관세 철폐와 수입규제 전폐 시 저가격 외국산 수입증가로 국내 업체가 타격을 받는다고 보고 이들 품목은 일단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년 후 재협상 하려는가 하며 협상 기간에도 한국산에만 배정해 오던 김 키퍼를 중국에게도 배정하는 등 한일 FTA 협상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렇다고 일본이 농산물 관련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한국 측 예상대로 대일농산물 추가 수출 5천만 달러의 혜택만을 볼 것인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일본의 농정개혁 이후 최고급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추가수입으로 우리 농가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非關稅措置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비관세조치란 무역·투자활동을 왜곡하는 관세 이외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품을 차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부와 민간 업종단체 등의 각종 裁量的 조치를 말한다. 특히 일본의 비관세조치는 선진국 중에서도 유달리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미통상마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며 한일 FTA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양국 간 인식의 갭을 메우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었다.

다행히 산관학 공동연구회 산하에 비관세조치 협의체를 가동하게 되고 본 협상에서도

이를 사전협의분과로서 공인하게 된 것은 양국 통상교섭사에 기록될 만한 성과였다고 판단된다. 실제 수량제한, 기술장벽, 위생검역, 유통장벽 등 한국기업이 대일수출 혹은 일본 내에서의 제반 영업활동상 직면하는 非關稅障壁 혹은 措置들은 물론 일본기업의 한국내 비즈니스상의 각종 애로요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와 같은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反競爭的 慣行의 시정을 통해 FTA 협상을 위한 신뢰관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구체적 이슈에 관한 사실 확인, 관련 규정상의 문제 등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계속 검토하되 논의의 대상을 정부의 공적규제에 의거한 非關稅措置에 국한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① 協商的 非對稱性이다. 일본은 이미 공적규제를 상당수준 완화·철폐하는 대신 이를 民規制⁽¹⁰⁾의 틀로 전환해 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공적규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② 서비스와 新産業 분야 각종 규제 완화·철폐에 대한 담보력이 약화된다. 한일 양국은 서비스와 신산업분야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존 제조업 성장마저 제약하며 국내외 가격차를 확대, 내수를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당장의 貿易投資效果에 연연하기보다 국내구조개혁과 실질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비관세장벽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양국의 기득권자가 규제의 溫床을 반납하는 개혁과 협상의지가 없는 한 선진 路 구축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原產地 規定의 경우 양측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원산지 규정 설정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국을 경유한 제3국 제품의 迂回輸入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원산지 규정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양국 간 무역투자활성화에 부담이 되거나 다양한 역내 공급체인네트워크에서 제외될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운용은 自肅해야 하지만 적어도 향후 급속한 기술발전을 고려한 우리의 품목별 대일경쟁력을 고려하여 원산지 획득의 난이도를 협상하자는 것이다.

넷째, 技術障壁과 관련된 상호인증협정(MRA)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소극적이었으나 한국 측 요구에 의해 분과 설치까지는 가능했다. 그러나 인증발급기관의 선정 등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우리의 대일농수산물 수출과 관련이 깊은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분야에서는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을 유지하려는 반면 한국 측은 가급적 최소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현재는 물론 장래의 교역상품의 기술적 특성에 관련된 專門知識과 國際協商的 專門性이 요구되는 바 관련 전문가가

(10) 기존의 민간업자가 관련 업종단체를 통해 新規參入을 규제하는 각종 反競爭的 行위를 통칭한다. 그러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모두 WTO 정부조달 협정 회원국이나 현재 양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인력이동상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측은 일본 측에 WTO+ α 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中央政府와 地方政府로 나누어 정부조달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서비스 貿易分野이다. 일본은 한국의 2대 서비스 수출국(23.4%), 2대 서비스 수입국(16.4%)이며, 한국은 일본의 6대 서비스 수입국(4.9%), 3대 서비스 수출국(5.4%)이다. 서비스 自由化는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DDA상의 양허내용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의료·보건, 건설전문, 법률 등 전문인력 이동의 경우 일측은 불법 입국 및 불법 체류 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어 자연인 이동에 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

여섯째, 知的財産權 問題는 일본으로서는 동아시아 FTA 최종점 협상의제인 만큼 자국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룰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창출한 자에게 排他的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지식창조 활동 촉진, 지적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公正競争을 촉진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의 對中기술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인식을 공유할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용과 경쟁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지재권 보호에 따른 貿易歪曲은 최대한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곱째, 양국 간 投資擴大 및 中小企業協力은 한국업체가 FTA에 거는 기대가 큰 분야이다. 한국 측은 한일 FTA를 계기로 일본의 대일투자 확대와 함께 양국 해당부처 간의 기존 협력 틀을 넘어 피해업종의 업종전환, 부실부문의 퇴출, 사업재편성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직·실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産業技術協力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피해업종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고 선진국과 후발국 간 FTA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소위 Capacity Building 확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부품소재 산업은 글로벌 대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경쟁력강화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1국2제도의 경제특구와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상호진출을 통해 相互競争力 강화는 물론 투자환경개선과 협상을 위한 상호 신뢰기반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3.3. 國內 業種 間 利害 衝突

이상과 같은 협상의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해대립이나 시장개방을 둘러싼 농업, 제조업, 서비스 등 업종 간 마찰의 강도보다는 제조업 내부 업종, 규모, 비즈니스 형태 간 이

해대립의 강도가 더 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은 소극적이고 섬유, 신발, 석유화학, 농업 등은 비교적 적극적이지만 동일 업종 내에서도 수출과 내수, 가공업체와 부품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規制業種과 非規制業種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적극적, 후자는 소극적이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어느 경우이든 일본 제조품의 관세수준이 낮은 데다 철강, IT 품목은 관세가 제로이므로 대일수출 유망상품 개발능력을 제고하지 않는 한 단순한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추가적 對日輸出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업계는 완성차의 경우 일본수입차로 인한 시장잠식을 우려, 한일 FTA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계도 조립업체는 적극적이지만 부품공급업체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모듈부품 기술이전과 대일수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극적이다. 전자전기 업종의 경우 일부 첨단기술제품을 출시 중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본제 부품을 수입, 조립하는 업체는 부품 수입 가격 하락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분야는 일본이 高關稅이므로 관세철폐 시 범용제품의 대일수출이 확대되지만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오히려 대일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IT 분야는 양국 간 수평적 분업 정도가 매우 높지만 규격공통화, 국제표준화 등 협력이 본국도에 오르면 통합시장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對日貿易赤字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수산물식품 업계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關稅 인하로 對日輸出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여타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본의 현행 수입규제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 개방에 의한 수출확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신규진입자의 출현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본다.

섬유, 생활용품의 경우도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저가 범용품은 중국 등과의 경쟁, 고가품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일본 내 경쟁품과의 경쟁상 불리해져 대일수출보다는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한국은 중저가, 일본은 고가품에 特化하는 전형적인 수직적 산업내 분업이 고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일본 건설시장이 특히 監理技術者의 직원채용 및 상주, 건설업 유경험의 경영관리 책임자 고용이 어려운 등 매우 폐쇄적이므로 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실질적인 접근도가 크게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관급공사 발주 시 각종 民間規制가 많아 市場進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FTA에 대한 국내업계의 소극적 입장과 업종내부의 이해대립이 조정되

지 않는다면 일본의 EPA/FTA 대상국 선정을 위한 전략적 기준에만 의하면 한국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양국 간 기술격차와 산업 연관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며 금후의 기술발전과 격차 변화, FTA 협상 결과, 양국내 구조개혁과 업종통합을 통한 規模經濟, 동아시아역내 네트워크經濟, 範圍經濟 이익의 향방 여하에 따라서는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본 양국 간 이슈별 이해대립과 국내업체 간 이해대립을 상호 밀접한 聯關性을 지니고 있지만 전자의 대립구도 조정이 선결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농수산 시장 실질적 개방, 한국의 제조업의 점진적 개방과 일본의 대한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완화·철폐가 양국 간 이해대립 완화 → 한국 내 이해대립 조정을 거쳐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겠다.

물론 일본으로서는 韓國 製造業의 全面開放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미 핵심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한국시장은 관세의 일부 인하만으로도 시장쉐어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전면개방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서비스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하게 되고 DDA 협상타결 시까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일본과의 협상은 또다시 평행선을 긋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다른 무역·투자파트너들 간의 연대강화로 인한 貿易·投資轉換效果는 예상외로 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실제 한미 FTA 발효 이후 이러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4. 産業貿易調整 支援과 進入規制의 限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릇 FTA를 비롯하여 貿易·投資自由化에 따른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積極的 産業構造調整을 시도하고 기업차원에서는 해당 업종의 과당경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新規進入을 制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일수이다. 적어도 한일 양국은 산업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다 FTA 재협상을 위한 국내 컨센서스 형성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즉 피해업종 혹은 집단을 무마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역조정지원과 기존기업과 단체에 의한 신규진입 조치가 산관협조체제 아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에서는 FTA를 비롯하여 DDA협상 타결에 따른 산업조정, 노동시장 유동화,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원활히 함으로써 企業競爭力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貿易調整支援 입법을 추진해 왔다. 나아가 추가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쉐어 잠식을 우려하여 FTA에 정면 반대해 온 일부 과점업종이나 단체는 앞으로 신규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구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혹은 업종단체의 직간접 개입은 두 가지 의미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첫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계층과 신규 진입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현저하게 떨어뜨림으로써 중국적으로는 貿易·投資自由化의 실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둘째, WTO 가맹국으로서 세이프가드 발동 시 이러한 구조조정이 그 수단의 선택과 관련 의사결정 메카니즘이 각국의 재량에 일임되고 있는 만큼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 FTA 재협상에 앞서 産業構造調整 이론 차원에서 한일 FTA에 따른 산업조정지원 조치와 寡占産業의 공동 진입 억제 정책의 한계를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4.1. 貿易調整支援 立法의 問題點

한국은 최근 동시다발적 FTA정책이 개방통상국가전략의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한 수입제한조치에 의한 단기적인 피해방지 차원을 넘어 國際競爭力 향상을 위해 미국의 통상법 201조와 같은 적극적인 産業調整支援이 가능한 지원법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2005년 11월 7일 정부가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한 「製造業 等の 貿易調整支援에 관한 法律案」은 FTA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앞당기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自由貿易協定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綜合支援對策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貿易調整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FTA이행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 전직·재취업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며, 둘째, 동 지원은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셋째, 산업자원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무역조정 효과적 지원을 위해 貿易調整支援綜合對策을 수립하며, 넷째, 무역피해를 입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의 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해당기업의 상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증가가 이러한 피해의 주된 원인이며 해당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경우에는 貿易調整企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정보, 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무

역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轉職·再就業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전직·채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지원수단을 보면 무역조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에서 필요한 용자, 기존의 산업발전법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동 조합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정부가 출자하며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雇傭政策基本法 또는 雇傭保險法에 의한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이들 조정지원심의기구로서 貿易調整支援委員會를 재정경제부에 두기로 했다. 동시에 지원심의 이전단계인 貿易調整計劃評價委員會는 산업자원부, 貿易調整支援센터는 산자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두고 동 산하단체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동 법률안 제출 이후 ① WTO 규정과의 合致性, ② 무역조정기업의 경영악화와 수입증가와의 인과성을 비롯한 무역조정 계획의 합리성 등을 포함한 企業支援制度의 실효성, ③ 동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과 豫算 確保 여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①은 무역조정지원이 기존의 법 규정에 근거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한 특정성과 수출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조치가능 보조금과 금지보조금으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지역적 특정성 요건에는 저촉될 가능성이 全無한 것은 아니다. ②는 구체적인 제도운영은 대부분 대통령령에 일임하는 형식을 띠게 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③은 지원위원회가 현업부서인 산업자원부와 노동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어짐으로써 부처별 이견조율과 예산 확보상⁽¹¹⁾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지원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①, ②에 대한 기본입장이 법률 조문에 명시되고 支援豫算의 效率性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지원대상 업선, 지원기간 한정, 지원효과의 철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모럴 헤저드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FTA에 따른 이해조정과 산업경쟁력 회복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에서 일탈하고 국내외에 걸쳐 새로운 마찰과 추가 조정 코스트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11) 산업자원부는 당초 안에서 재원확보를 위해 무역조정기금 설치·운영을 주장한 바 있으나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수의 기금운용에서 오는 부실과 WTO 규정과의 합치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4.2. FTA와 貿易産業調整支援의 限界

이미 본 바와 같이 한일 FTA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양국의 사양산업의 비교우위를 급속하게 저하시킴과 동시에 조정원조의 실시여부와 그 지원 폭의 문제 등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FTA에 의해 한국의 대일교역조건이 개선되더라도 賃金이 硬直的일 경우에는 소비자이익이 확보된 상태에서라도 생산, 고용, 무역수지 악화로 생산자이익은 감소함으로써 전체 경제적 후생 손실은 오히려 증대하게 된다. 이는 完全競爭을 가정한 흔히 말하는 FTA의 經濟的 效果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조선, 철강부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며 섬유의 경우 勞動集約財인 만큼 고용문제는 조선, 철강보다 심각하다. 동시에 철강, 석유화학은 대기업, 電子는 중소 하청기업의 고용문제가 일층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분야 중 이미 海外直接投資, 업종전환, 철수 등을 통해 국내 설비투자가 축소되거나 그 가능성이 큰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축소 가능성을 줄 것이지만 國內構造調整이 늘린 업종일수록 피해는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흔히들 산업조정원조 정책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자주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 업종들이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 세력과의 연대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실업수당, 재훈련 보조, 단기적으로 해외로부터의 경쟁배제를 위한 貿易制限政策(일시적인 관세인상, 수입제한 등), 설비폐기, 生産調整카르텔, 사양산업 해외이전(直接投資)에 대한 보조, 지역정책, 사업전환 혹은 신규사업의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産業調整援助 政策手段은 단기적으로는 실업해소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産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킴으로써 국내후생은 물론 세계적인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한 정책수단의 예상되는 지원효과와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수입제한 등 貿易制限措置의 경우이다. 산업조정의 원인이 교역조건 변화에 있었으므로 이들 관세, 수입제한조치는 국내가격을 인상, 국내 상대가격을 교역조건변화 이전 수준으로 바꾸어 놓게 한다. 그 결과 국내생산은 변화하지 않고, 교역조건은 개선되므로 소비자 후생은 증대하고 생산축소가 회피되는 만큼 전반적인 經濟厚生은 증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貿易制限措置로 국내가격이 왜곡, 산업 간의 자원이동이 제약, 사양산업 보호정책이 장기화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 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우 그 예외

가 아니다. 이는 단기적인 실업회피와 장기 산업구조조정 간의 결합적 상충성 문제로서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貿易制限政策을 구사, 일종의 Announcement effect를 부여, 중장기적으로 투자 감소, 산업 간 자원이동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호의 限時性 확보가 곤란하여 산업조정이 지연되고 관리무역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는 점에서 이는 기본적으로 自由貿易體制 속에 수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輸出自主規制의 경우이다. 실제 FTA에 따른 단기적인 고용, 투자, 생산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양국 관련 기업으로서는 특히 과점업종 간의 설비투자, 생산조정 카르텔 협정 혹은 그에 유사한 협조적 행동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경우 각 업체에 수출한도를 할당해야 하므로 기업수가 많거나 자유진입이 허용되면 할당한도 배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輸出自主規制 조치가 현재와 같은 한일 양국의 경쟁업종에서 보는 寡占產業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카르텔 효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예컨대 일본기업은 한일 FTA에 따른 한국기업에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동종업종의 對韓輸出自主規制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¹²⁾ 이 경우 수출자주규제의 한도가 매우 낮게 설정되지 않는 한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업체도 동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수요자의 희생에 의한 것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輸出限度 配分은 恣意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신규 진입하는 경쟁기업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 수출자주규제가 계속되는 한 양국의 해당산업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한일 양국의 寡占業種이 動學的 規模經濟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육성함으로써 양국은 물론 세계전체의 경제후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주규제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업종이 확립되고 있는 역외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선발자로서 얻고 있던 生産者剩餘⁽¹³⁾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역외선발국의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잉여 감소분을 상쇄하지 않는 한 역내 2개 後發國(여기서는 한일 양국을 해당업종을 보호·육성한다는 의미에서 후발국으로 상정)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先發國의 기득권을 잠식하게 되고 역외

(12) 실제 토요다 자동차는 한일 FTA로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한국의 대일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와 이로 인한 추가개방의 지연을 우려하여 대한수출자주규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확보전략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13) 혹은 準렌트(= 이윤 + 고정비)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선발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¹⁴⁾

셋째, 雇傭補助의 경우이다. 사양산업에서의 실업을 회피하기 위해 적절한 임금보조를 행하면 고용확보를 위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 생산축소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수입제한 조치와는 달리 貨金補助는 소비자가 교역조건개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보조는 유효한 정부개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입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단기 실업 문제와 장기 산업조정 간의 경합관계가 발생한다. 사양산업에 임금을 보조하는 한 여타 산업으로의 생산요소 이동이 제약될 것이고 그만큼 限時性 확보와 이를 위한 政府介入이 과연 민간의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넷째, 構造轉換促進이다. 이상 3가지 政策手段(이는 주로 사양산업으로부터 생산요소퇴출을 촉진하기보다 단기적인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과는 달리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의 직종전환을 위한 기능훈련 제공, 사양산업 밀집지역에의 기업유치, 설비폐기 보조 등 구조전환촉진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① 사양산업으로부터의 생산요소 이동을 위한 시장일임과 정부개입 어느 쪽이 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는가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불분명하다. 이미 지적인 貨金硬直性이 조정속도 지연의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다. 이밖에 조정속도를 지연시키는 市場失敗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개입이 과연 유용한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貨金硬直性이 반드시 政府介入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사양산업이 勞動集約産業일 경우 과도한 생산요소이동은 오히려 실업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여타산업이 사양산업의 노동을 충분히 흡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본만 유출시킨다면 노동자 해고와 함께 실업은 더욱 증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産業調整手段은 일부 이해관계자·국가의 주장을 크게 반영하기 쉬운 결점을 안고 있다. 특히 사회적 총잉여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아 불필요한 무역제한조치도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반영, 도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 의미에서 한일 FTA에 따른 산업조정을 원활히 실행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책협조가 긴요하며, GATT/WTO 등의 현행 룰과의 정합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4) 이는 결국 한일 FTA로 인한 역외국으로부터의 무역전환효과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의미한다.

4.3. 寡占業種의 共同進入抑制의 限界

한일 양국은 현재 제조업의 일부 분야에서 상호경합하고 있으며 過當競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FTA 실시 전 혹은 후에도 공동으로 설비감축을 통해 寡占産業의 動態的 規模經濟를 活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어도 동종기업 차원에서는 자주 거론되고 있다.⁽¹⁵⁾

원래 過剩投資 問題는 독점도가 그다지 크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크지 않지만 양국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의 대체성이 높아 양국기업 간의 전략적 행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산업에서 발생하기 쉽다. 즉 어느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戰略的 代替關係에 있는 다른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결국 이러한 전략적 동기에 의해 투자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다해지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양국의 생산기술상 規模經濟性이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과점적 경쟁균형에서 성립하는 기업수가 경제후생을 최대화하는 기업수보다 과다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일 양국 寡占企業 간의 생산량과 가격을 통한 경쟁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만약 기업수를 진입제한정책에 의해 억제할 수 있다면 경제후생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 FTA 체결 시점에서 기업수가 사회적으로 과잉이라는 판단 아래 진입이 규제되면 기존기업 간에는 암묵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되거나 신규진입의 위협이 줄어들어 산업의 경쟁 정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 혹은 업종단체 (혹은 FTA를 주도하는 일부업종)가 寡占産業에 대한 進入規制를 선호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일층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른바 한일 양국 경합업종의 대표기업이 戰略的 代替關係에 있지 않고 戰略的 補完關係에 있는 경우에는 過剩進入定理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한일 어느 쪽이 신규진입을 허용, 산업전체의 산출량이 증대하면 개별기업의 생산량도 증대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신규진입은 오히려 촉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령 戰略的 代替關係에 있더라도 異質材를 생산하는 과점산업의 경우, 경쟁촉진에 의한 사회후생증대 효과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즉 이질재인 경우 신규진입 증대는 재화의 다양성 증대라는 추가적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일 양국은 同質財 투자경쟁에 주력해 왔으나 FTA의 결과 기술혁신이 진행되는 과정에

(15) 한일 양국의 정부 간 교섭의 장에서도 한일 FTA의 필요성으로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논거 중 하나가 양국 간 과당경쟁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즉 경쟁업종 간의 과당경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른바 합의적 분업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서 새로운 기술지식을 공유, 상호이질의 신제품을 신규진입기업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사전에 진입을 규제한다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신제품·신기술 개발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전체가 누릴 수 있는 소비다양성의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셋째, 양국 정부 혹은 단체의 진입규제에 필요한 정보수집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재화·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고려할 경우 정부개입의 유효성 여부는 해당과점산업이 同質的인지 異質的인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는지 여부에 의존한다. 또한 진입규제 시에도 산업내 기업수의 적정수준에 관한 정보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어야 하며 동시에 規制當局은 단순히 현시점에서 해당산업이 동질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장래에도 그것이 동질적 산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消費者 選好度가 여하히 변할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규제당국의 사전진입규제의 유효성이 의문시된다.

넷째, 이들 과점산업의 自由進入均衡에서의 기업수가 最適企業數를 상회하므로 기업수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기존기업 중 퇴출기업을 선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동시에 진입규제에 의해 기존기업의 생산량을 확보, 규모경제이익을 얻는 경우라 할지라도 산업전체의 산출량은 감소, 시장가격은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잉여 감소를 상회하는 생산자잉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희생에 의한 기업보호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5. 核心 協商 議題 및 協力 分野 先決 可能性⁽¹⁶⁾

5.1. 農產物 市場開放에 대한 日本 側 立場 變化⁽¹⁷⁾

과연 일본은 우리의 관심분야인 農水產物의 실질적 개방에 어느 정도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인지. 협상 개시 이전부터 농산물의 경우 품목수든 금액기준이든 開放水準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¹⁸⁾ 일·싱가포르 EPA 협상과정에서 보인 일본 측 농수산분야 양허안은 싱가포르의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 일본의 대멕시코 농산물 협상타결 과정에서의 일본의 입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한일

(16) 핵심외제인 MRA, 표준화와 지적권분야에 관해서는 지면 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룬다.

(17) 김도형(2007b, pp. 310-313) 인용.

(18)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양허안을 교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속단은 금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FTA 재협상에서도 재연될지 않을지 우려된다.

일본의 대멕시코 FTA 협상과정을 보면 추후 韓日 FTA 협상재개 시의 일본 측의 소극적 입장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DDA 협상중료 이전에는 한국이라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개방약속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 일본의 다자통상 전문 관료로부터 개진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5년 4월 1일 발효한 일본-멕시코 FTA에서 일본의 멕시코에 대한 자국의 농수산물시장 개방수준을 品目數와 金額基準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수 기준으로는 HS 9단위 2,009개 품목의 양허수준을 보면 931개 품목은 즉시철폐, 단계적 개방, 쿼터 등의 형태로 양허했지만 나머지 1,078개 품목은 양허에서 일단 제외했다. 즉 멕시코에 대한 일본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수준은 품목수 기준으로는 불과 46.3%에 불과하다. 동시에 즉시철폐 품목은 637개 품목이지만 이중 361개 품목은 MFN 실행관세율이 이미 0%였으며 양허제의 품목은 대체로 MFN 실행관세율이 높거나 종량세 품목으로서 전체 농수산물 품목수 중 53.7%에 속하고 있다. 한편 4년, 6년, 8년, 11년 등 양해된 기간에 관세를 균등감축하거나 특정 스케줄에 따라 감축하는 품목은 217개, 쿼터적용품목은 77개로 전체 농수산물 품목수의 14.6%에 달한다.⁽¹⁹⁾

일본과 멕시코 간의 농산물 교역구조가 한일의 경우와는 상이하므로 한일 FTA 협상에서 일본 측이 農産物 開放水準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다.⁽²⁰⁾ 그러나 농수산 분야에 관한 최근 일부 일본 측 논자의 변화된 협상자세를 읽고 이에 답해야 한다.

사실 日本農産物 平均關稅率은 12%로 한국의 84%는 물론 EU의 20%, 타이의 35%보다 낮으며 自給率은 40%로 WTO 농업보호 삭감국 중 우등생에 속한다. 이와 같이 가격지지도 폐지하고 관세도 낮은데 일본의 농산물과 식료품이 해외보다 비싼 것은 소비자욕구에 맞추려고 품질향상을 한 코스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국내외가격차가 큰 것은 엔화강세와 이들 노력 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농업은 이제는 유럽과 같이 高關稅에 의존하는 農業保護國은 아니다. 동시에 고관세 품목수는 농수산 전체의 약 10% 정도(야채는 3%)이다.

첫째, 低關稅 品目を 중심으로 개방한다면 많은 농산물을 예외없이 포함하여 FTA를 추

(19)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내부자료(2005) 참조.

(20) 그동안 양국 업계단체 간의 한일 FTA 재개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일본정부가 농산물의 대한 개방을 위해 협상초기에 비해 적극적인 양허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나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진할 수 있다. 이미 일·필리핀, 일·말레이시아, 일·타이에 이어 일·멕시코 FTA도 이러한 입장에서 추진해 왔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고관세 품목의 자유화 여부가 문제이다.

둘째, 대신 일본 측의 高關稅 品目 開放 例外 제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측은 쌀, 우유·유제품, 육류, 설탕은 국가식량안보와 지역사회 존속이라는 공공성 차원에서 개방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WTO도 예외로 인정하고 각국의 기존 FTA에서도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데이터를 통해 자국 소비자와 한국 측을 납득시켜야 한다. 일부 농산물에서 고관세 유지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만큼 直拂制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고관세 품목 관세를 특정국에 대해서만 제로로 한다면 무역전환 효과 때문에 역외국 배제로 인한 후생왜곡이 발생한다. 이는 GATT24조(가능한 한 모든 품목을 자유화한다는 조건하에서 FTA 용인)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시산 결과를⁽²¹⁾ 보지 않더라도 한국만에 대한 자유화 조치가 대일수출시장을 잠식당할지도 모르는 역외국 반발도 예상된다.

셋째, 고관세 품목 예외조치에 의한 한일 FTA의 역외차별성 완화 주장을 한국 측이 수용하는 대신 한국의 대일농산물 수출 가능성 축소에 따른 손실은 일본 측이 보전하는 것이 공평하다. 따라서 타이틀 비롯한 아시아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협력과 자유화 조화원칙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피해농가(혹은 한국의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도 동일한 맥락에서 적용 가능)의 구조조정과 이후의 對日輸出品에 대한 關稅 優先撤廢(혹은 무제한도 설정)를 약속하는 등 한국의 구조조정 대상 영세농과 영세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아시아 선도국 일본의 정당한 역할일 것이다.

넷째, 일본도 이러한 역외차별성 완화와 동시에 자국내에서도 자유화로 인한 국내이익 편재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많은 피해대상 농가,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쟁력강화 자금과 경쟁력 격차 보전 등을 위한 기금조성이 필수적인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여기서 최근의 EU와 유사한 동아시아 共通農業政策 구상에[鈴木宣弘(2005a)]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동아시아 FTA 참가국(예컨대 한중일)이 각각 GDP 규모에 따라 기금에 각출, 아시아생태계와 환경도 보전하면서 자원부존조건이 크게 상이한 각국의 다양한 농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공통 예산에서 공통 기준에 의거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

(21) 한일 FTA 시 돼지고기 자유화 영향 시산 결과에 의하면 수입국인 일본의 경제후생을 감소시킨다. 이는 일본정부의 관세수입 감소와 수입업자의 기존 차액관세 제도 철폐에 따른 차익(렌트)의 상실분이 소비자이익 증가분을 상회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쌀 수입자유화를 FTA에 포함하되 국내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세삭감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격과 생산을 유지하려면 3개국의 재정부담이 방대해진다.⁽²²⁾ 확실히 쌀을 3국만이 完全自由化하면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은 물론 공통농업정책으로는 완전한 보전이 어렵다.

가령 현재의 가격과 생산을 유지하도록 보전하지 않으면서 12,000엔/60kg = 200엔/kg의 보전기준미가(한국의 경우 150엔/kg)를 적용하되⁽²³⁾ 일본의 현행 정도의 쌀 생산 조정 유지 시 예상되는 피해(자급율(70%) 하락, 질소 총공급/농지흡수한계비율 상승)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조정을 해제하면 韓中日 財政負擔은 각각 1.3조 엔, 4,100억 엔, 1,600억 엔으로 시산된다.

따라서 韓中日 FTA에 쌀을 포함시키되 각국의 GDP에 비례하여 直拂制를 행할 경우 각국은 이상의 부담을 상한선으로 자급률과 환경부하도 함께 고려하면서 관세를 최대한 인하하려 한다면 생산조정을 해제, 보전기준 미가를 한 가마 12,000엔 정도로 설정, 關稅率은 200% 정도로 하는 것이 공통농업정책의 유지가능 조건이다.

다섯째, 한일 양국은 FTA를 통해 농수산물도 제조업과 같이 水平分業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현재 농수산물의 양국 간(특히 서울과 일본의 지방 간) 가격을 비교하면 고급품의 경우 거의 접근하고 있어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시 일본의 대한수출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확대된 시장에서 일본 농수산업자들은 일본내 산지(9개 불럭)에 더해 한국을 한 개의 불럭으로 추가하여 산지 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양국 국내의 FTA이익의 편재현상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측의 변화된 논리 전개이다. 실제 참치, 대구, 우유 및 유제품, 채소 등은 제조업의 제품·부품과 같이 한일(혹은 중국 연안부 포함) 간 쌍방향 교역을 통해 양국의 國內 過剩生産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고 농수산 가계의 實質所得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 측은 일본의 農水産物 市場開放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일본 측 고관세 품목 유지 대신 우리 측의 요구를 강력하게 반영시키면서 쌀 자급률, 환경보전, 재정부담,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아시아共通農業政策 구상을 숙의할 필요가 있다.

5.2. 兩國의 非關稅障壁 緩和·撤廢 스케줄

양국 간 산업내 수평분업을 촉진하려면 현재는 물론 잠재적인 무역·투자코스트 상승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²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양국

(22) 생산자극적인 직불제 도입의 경우에도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직불단가도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상승한다.

(23) 鈴木宣弘(2005b) 및 鈴木宣弘(2005c) 참조.

의 현행 법·제도·관행 아래 무역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관세 조치에 대한 特定化(Specification), 둘째, 시정방법의 선택, 즉 이를 모두 제거할 것인지, 혹은 무역상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율을 도입할 것인지, 셋째, 非關稅障壁 緩和·撤廢는 양국의 법·제도 선진화, 개방적 지역주의 신장과 多者 를 형성에 기여, 미국 등 일부 역외국의 반발을 제어함으로써 한일 간 FTA의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정책보루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1993년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제적 규제를 축소하고 일본시장 개방도를 높여 오고 있다. 그러나 社會的 規制(환경, 소음, 쓰레기, 안전, 위생규제 등) 신설과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에 의한 自主·自律規制는 늘어나면서 비관세장벽은 새로운 규제의 틀을 쓰고 濫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양국의 비관세장벽은 교역제는 물론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의 過剩·重複規制의 틀 속에서 존재하므로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양국의 國內外價格差⁽²⁵⁾ 즉 고비용·저효율의 주된 요인⁽²⁶⁾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의 對韓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對韓수입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각종요인으로 구성되는 日本의 對韓가격차의 一部’로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시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점을 지닌다.

첫째, 현재는 상대국에 대한 시장과 투자진출이 전무하여 非關稅障壁의 영향이 미미한 재화·서비스일지라도 FTA 이후 장차 신규진입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처, 둘째, 수출입 관련 비관세장벽보다 오히려 광범하고 구조적인 비제조업 혹은 내수산업에서의 過剩·重複規制에 접근함으로써 비관세장벽 완화·철폐의 실효성을

(24) 한일 FTA에 관한 국내의 기존의 定量的, 定性的 분석의 대부분은 관세인하·철폐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비관세장벽 철폐까지를 포함한 연구의 경우에도 국내외가격차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의거하고 있는 만큼 한일 FTA의 효과는 상당히 偏向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5) 일본의 國內外價格差(differential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market)와 購買力平價(ppp)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購買力平價 = 일본국내가격(엔 표시)/해외가격(현지통화 표시). 국내외가격차 = 일본국내가격(엔 표시)/해외가격(현지통화 표시) × 환율(엔/현지통화). 따라서 내외가격차 = 구매력평가(엔/현지통화)/환율(엔/현지통화).

(26) 고비용·저효율 요인으로서는 ① 사회적 요인(제도, 규제, 상관행 등에 의해 輸入, 進入, 價格이 규제되고 경쟁이 제한되어 결국 생산성 하락을 초래), ② 자연적 요인(국토(일본의 경우 지진발생 등), 기후, 자원제약, 사회간접자본 부족 등에 따른 까다로운 仕様, 원재료·물류비 상승, 저효율 초래), ③ 소비자태도(까다로운 仕様과 과다 브랜드지향, 과잉품질, 정보부족에 따른 업체의 일방적 고가격 정책 가능), ④ 기업의 放漫經營(과당경쟁에 따른 과잉설비, 과다한 간접경비, 과다한 非關聯 다각화와 연구개발 코스트), ⑤ 자국 환율 평가절상(달러표시 임금상승) 등을 들 수 있다.

확보, 셋째,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 성과를 비관세장벽 철폐여부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최근 기업과 정부의 구조개혁을 통해 對韓價格差를 축소시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2배 이상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환율요인 이외의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일본의 고비용·低效率 구조를 濫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內外價格差를 구성하는 제반 요인 중에는 경기변동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混在되어 있지만 그 가격차만큼 輸入과 進入이 저해되고 있으며 가격차가 용이하게 축소되지 않을 경우 이는 어떤 형태이든 장벽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내외가격차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生産性 向上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통해 자국통화의 평가절상 요인(통화절상은 국내외가격차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제거해 가야 한다. 그러나 대폭적인 가격차를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으로 해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은 비관세장벽에 관한 한 단계적 접근방법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²⁷⁾

5.3. 東北亞 廣域的 提携와 協力 메뉴 開發

현재 한일 양국내에는 中國威脅論과 함께 産業空洞化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산업피해는 근본적으로 자국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이 지연됨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한일 FTA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과 구조고도화, 무역투자 활성화, 산업내 분업을 촉진하려면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활동범위와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에서 비롯되는 디플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고용기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을 한일 양국의 공동파트너로 활용하면서 한중일 3국 기업 간 제휴와 협력을 통해 規模經濟 이익에 더하여 範圍經濟(Economy of Scale)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미 논의한 주요 제조업 중 특히 한일의 주력업종은 양국만으로는 상당기간 기존의 과잉생산·과당경쟁 체질을 시정하여 아시아 진출 구미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양국 간 산업내 분업과 시장접근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한중일 FTA를 향한 3국 간 신뢰형성에도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²⁸⁾ 동북아 廣域協力體制 구축이 필요

(27) FTA 실시 초기에 양국이 합의,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관세장벽이 이들 대책 중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가에 따라 FTA의 정책효과가 좌우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관세장벽에 관한 相互認知, 완화·철폐가 지연될수록 FTA의 시장통합, 경쟁촉진, 생산성향상 등 동태적 효과는 제약될 것이다.

하다.

첫째, 기계류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장기 모듈화 계획에 입각한 모델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부품 공용화·표준화, 계측기기 등 형식승인이 필요한 분야 선정, 3국 간 투자 협정과 相互認證協定(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조기 체결과 세계시장에서의 形式承認 획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둘째, 自動車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주요 산업클러스터를 소규모 모듈 特化地로 분화하여 次世代 모듈에 관한 공동기술개발, 기술·기능인력 집중 양성, 디지털제품·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3국 부품업체의 공동 B2B사업 및 한중일 3국 간 자동차 네트워크 망을 구축한다.

셋째, 石油化學분야에서 일본은 정밀화학 분야의 對韓직접투자와 기술이전, 한국은 범용제품 분야 플랜트의 operating기술을 중국에 과감하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서부 대개발 사업에는 대규모 자본과 기술 라이선싱이 필요한 대형 콤비나트보다 품목별 단일 플랜트 형태의 공동 진출이 효과적이다.⁽²⁹⁾ 나아가 구미기업의 아시아전략 강화⁽³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R&D인력과 정보교환,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공정개선(나노기술과의 融合), 원료전환기술 등 차세대 기술과 환경분야 공동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넷째, 電子情報通信분야에서 3국은 세계적 標準化競爭에 공동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통합을 통해 價値連鎖를 실현해 가기 위해 한일IT협력 이니셔티브의 합의 사항⁽³¹⁾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3국 共同標準化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협력,⁽³²⁾ 정보통신분야의 慢性的 人力不足(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을 해소하기 위해 中國人力을 한일이 공동 개설하는 연수과정에 투입, 교육훈련 후 2국의 현장에 투입하고 한중일 3국 大學의 공동 IT인력육성 및 교류, 정보처리 자격 공동인증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일 양국의 대중 교역확대, 이에 따른 한일 양국 간 파생수요와 지방 간 교류

(28) 김도형(2007b, pp. 314-316) 인용.

(29) 중국의 경우 예컨대 폴리올레핀 프로젝트보다 ABS, PS, PVC 등 단일 플랜트 형태의 직접 투자가 자본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 구미기업은 앞으로 e-Biz 확대, 지구환경문제 해결, 次世代 新 技術開發 기반조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1) 1999년 한일 양국 정상은 한일IT협력 이니셔티브에서 산업별 B2B협력, e-Marketplace 공동 구축, 世界最初 電子文書交換(EDI)방식 도입, 한국의 eTrust와 일본의 Online Shopping Trust 마크 相互認證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2) 여기에는 제4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共同標準 제정, 3국의 비교우위 분야(중국의 항공·우주, 일본의 디지털 가전, 한국의 CDMA Silk Road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무선통신)를 중심으로 한 共同研究, 컴퓨터 부품의 표준화·공용화·相互認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확대 등 동북아 신규물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3국 간에는 Port & Hub Sale Competition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 시설 간 連繫未備·소프트웨어機能不足, 주변 産業立地와의 연결성 결여, 商社와 물류센터 기능이 취약하다. 한일 FTA 이후를 겨냥한 하드웨어의 과잉현상 시정, 허브항 背後地의 生産과 生活환경 개선, 금융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관련 정보망 구축은 국제다국적기업의 유치의 필수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³³⁾

여섯째, 양국 간 지방 간 교류가 빈번한 釜山·鎭海 경제자유지역과 일본 Kyushu 지역을 연계하여 한일 FTA 모델지역경제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北九州(Kita-Kyushu)의 FAZ(Free Access Zone)의 기능 간 연계를 위한 대형컨테이너 기지와 한국 동남권과 일본의 九州(Kyushu) 간의 韓日自動車分業圈⁽³⁴⁾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계획적으로 공동 정비해 나가야 한다.

5.4. 外換市場 安定과 金融 資本市場 協力

한일 양국은 아시아 金融危機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세계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만큼 製造業의 기반에 비해 金融서비스産業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이는 제조업 기반 성장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앙은행 간의 기존 거시정책협조 지속이라는 극히 선언적인 구호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공동목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중장기 關稅引下·撤廢의 긍정적 효과를 단기적 환율변동 리스크가 이를 상쇄하는 상황을 방지해서는 양국기업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變動換率制度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오랫동안 달러권에 속하면서 엔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즉 엔고·달러약세 때는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지만 엔약세·달러高의 경우에는 반대로 약화되는 등 경기변동의 진폭이 컸다. 이것이 소위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제국 간의 비대칭 메카니즘이다[大野健一·桜井宏二郎

(33) 예컨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경제특구의 경우 토지개발은 개발초기부터 민간자본은 물론 노하우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일괄분양 방식보다는 장기임대방식을 채용하고 특히 특구내 R&D 관련 업종 종업원들의 생활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 이외 지역에서도 각종 토지구제를 완화하고 세계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주체로 하여금 교육, 의료, 여가 시설 등 배후시설에 관한 초기투자비용을 개발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4) 日本 北九州의 響灘 自動車特區내의 완성차, 자동차 부품회사(九州, 山口 지역내 400개 社) 네트워크에 부산(예, 르노 삼성)과 울산의 완성차(현대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경남 창원외의 기계금속 부품, POSCO의 소재를 결합하면 동아시아 최대 자동차분업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지금까지 아시아각국은 대달러환율 안정을 목표로 한 환율정책(이른바 달러연동)을 통하여 안정성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그러나 아시아通貨危機에 의해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래 엔달러 환율변동은 일본과 아시아경제의 相互依存關係와 아시아景氣變動의 주요원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금까지 아시아는 각국통화가 거의 달러연동이었던 관계로 경기는 엔고기(1986-88, 91-95년)에는 호진, 엔화약세기(1989-90, 96년 이후)에는 부진해지는 패턴을 과거 20년간 반복했다. 그리하여 많은 아시아국가가 엔고기에는 거품이 팽창, 엔화약세기에는 거품 붕괴를 경험해 왔다. 실제 통화위기 직전인 1996년 이후 미국경기가 건실하게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각국은 수출 감속을 중심으로 조정국면에 들면서 자산가격이 급락하게 된 것은 엔화약세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본다면 아시아 각국으로서는 엔화환율은 어디까지나 자국경제의 펀더멘털과는 거리가 먼 외국통화이며 제3국의 환율변동으로 자국의 경기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각국 통화당국은 자국경제안정을 위해 엔화환율의 안정을 가장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자국통화의 대달러 안정만이 아니고 대엔 안정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통화위기를 계기로 달러연동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아시아에서의 엔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동시에 일본으로서도 아시아경제의 엔권화는 거시경제안정, 대외자산가치의 유지, 금융기관의 國際競爭力 증강에 기여하는 등의 메리트가 크다. 엔 사용·보유에 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조치가 취해진다 면 엔의 國際通貨로서의 매력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실제 아시아역내각국은 資本移動自由化, 中央銀行 自律性, 換率安定의 세 가지 목표의 동시 달성이 어려우며 환율정책은 대달러 안정뿐만 아니라 대엔 안정도 목표로 해야 아시아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본인식 아래 ASEAN+3에 의한 통화스왑 등의 金融協力の 실적을 공유하고 이를 확충해 가고 있다.⁽³⁵⁾

한국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참에 換率變動으로 인한 영향이 상이해서는 곤란하다. 최근에도 엔약세·달러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화 급상승, 한국의 수출가격경쟁력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 메카니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엔 달러 환율변동의 영향을 상당부분 제거해야 한다. 이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철폐 이상으로 시장통합과 자본축적에 의한 FTA 效果 極大化의 조건

(35) 최근 한일 양국 재무당국은 엔 캐리 트레이드에 의해 한국에 유입된 단기자금의 유출가능성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등 양국 간 금융외환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임은 두 말할 나위없다. 이를 위한 기본은 양국의 금융시장 통일이다.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결과 단기적으로 對日貿易赤字가 확대되더라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일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대한직접투자자로 국내환원되는 일본자금규모는 불과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1> 참조). 물론 장기목표로서 円圜실현도 금융시장 통일이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엔 國際化(국제거래시 엔의 사용·보유비율 상승) 속도는 매우 느리며 달리는 기축통화 조건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제국의 대미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엔 국제화는 ① 엔의 國際通貨로서의 이용확대에 의한 현 달러 중심 국제통화시스템의 불안정 해소와 국제무역투자 촉진, ② 일본의 과잉저축의 활용을 통한 아시아역내 경제의 안정적 발전, ③ 일본기업금융기관의 외환리스크와 외화유동성 리스크 감소, 환율변동에 중립적인 경제구조 전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일본의 금융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엔 공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적극적이다. 반면 동아시아제국은 당분간은 엔 사용·보유비율의 상승으로 큰 메리트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 간의 間隙을 메우려면 일본이 우선 엔 국제화를 국제거래당사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엔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일본국내 자본금융시장을 저렴하게 엔을 조달·운용할 수 있도록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³⁶⁾

첫째, 구주, 아시아생산거점과의 달러표시 수출입, 엔화표시 채무를 지닌 국가로부터 달러표시 에너지 수입으로 거래하는 등의 거래관행, 수출입선의 선호 및 엔화표시 자본조달상의 제약 등으로 엔화표시 거래비율은 그다지 상승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엔표시 무역금융 활성화와 엔차관을 활용한 엔화표시 원유·LNG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제국 통화를 달러 과도 의존에서 벗어나 달러·엔·유로의 복수통화 바스켓트에 연동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율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ASEAN+3의 장을 활용하여 쳡마이 이니셔티브의 내실을 다지고 자본이동관리, 역내외환결제제도 선진화 등 역내금융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아시아역내 債券市場 육성에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資本市場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과잉저축이 구미의 국제금융센터를 경유하여 국내로 환류함으로써 通貨와 期間의 Mismatch가 발생, 아시아금융위기를 자초했던 경험에 비추어 역내저축은 역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자본시장

(36) 円の國際化推進研究会(2003) 및 김도형(2007c) 참조.

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시아 국제, 국제금융기관채권 시장 육성, 증권화와 투자신탁 등을 활용한 통화리스크 경감(역내통화 바스켓트 표시 채권 발행 등), 아시아 신용등급기관 육성이 필수적이다.

넷째, 日本의 國際金融센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國際短期金融去來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읍 쇼어 시장과 TB, FB시장 활성화, 일본의 기관투자자와 비거주자들이 국제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운용이 가능하도록 원천징수 비적용 등의 특례조치를 부여하는 등 제도 면에서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의 ODA 예산확충, 아시아開發基金(AMF) 및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상기 아시아공동농업정책, 중소기업 협력사업, 아시아생태·에너지·물류 인프라 정비 사업, 對北개방개척지원사업 등을 통한 엔자금 증점 공여가 절실하다.

6. 맺 음 말

한일 양국은 이제 中國과의 경쟁이 가능한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로 국내경제의 兩極化가 극심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일이 중국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일 FTA를 계기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市場開放을 통해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 시장에서 깊은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도 많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FTA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러한 목표에 합의한 것은 韓日 FTA가 동아시아 지역의 經濟統合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며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서 체결될 다양한 FTA의 모델케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응하려면 한국의 제조업계, 그리고 일본의 농수산업계와 일부 제조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양국은 국내 피해 예상 산업계의 반발을 극복하고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내부협상과 저생산성부문의 고통스런 構造調整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협상 중단 이후 한국 측은 국내 일부 제조업계와 농산물업계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협상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바 있으며 공산품 분야 예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법·제도·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만큼 한일 FTA 협상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일 FTA 이후 한국의 실질적 개방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농수산시장 개방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실질적 市場統合을 위해서는 關稅撤廢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일본의 경우 공산품에 있어서는 대부분 품목이 현재 無稅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에 있어서는 관세철폐가 큰 의미가 없다. 반면 일본의 다양한 非關稅障壁 혹은 非關稅措置에 대해서는 이의 실질적인 개선이 없이는 한일 FTA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한국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자기 시장을 보호하고 경쟁제품 수입을 막으면 우선은 기득권을 지킬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성의 모순에 빠진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은 FTA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신규진입을 규제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다. 양국 정부는 FTA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국제적으로 약속한 자국내 공적규제와 민민규제 완화·철폐와 시장개방스케줄은 제대로 이행하고 민간기업도 한일 FTA 체결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아키텍처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 피해지역과 업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인재양성, 상시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

한일 FTA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향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려면 단순한 貿易自由化만이 아니라 보다 동아시아 광역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국가 간에 FTA를 체결할 때는 Capacity Building, Supporting industry 육성 차원에서 政府支援(개도국의 경우에는 ODA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 측은 양국기업 간 공동 R&D에 대한 정부지원,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설립, 부품소재 기업 간 투자펀드 조성 등 각종 産業協力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외환 금융자본시장 협력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광역협력을 위한 공동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현재로서는 양국 최고 통치권자의 이니셔티브 발휘 없이는 再協商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FTA에 따른 산업피해보상과 관련된 貿易調整支援法 등을 입법 운영을 통해 내부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본 측의 농업과 서비스분야 추가 개방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측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끝면 끝수록 국제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게 되고 양국의 동북아에서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양국 정부는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라는 기본목표를 외면하고 재협상이 용이하다거나 협상노하우를 습득한다는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여타국과의 FTA를 추진하며 필요한 협상상대를 기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양보, 양국기업이 절차탁마할 수 있는 고도의 經濟連帶協定을 향해 협상재개를 위한 물밑협상을 기대한다.

啓明大學校 國際學大學 日本學科 教授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전화: (053)580-5356
 팩스: (053)580-5163
 E-mail: dohkim@kmu.ac.kr

參 考 文 獻

- 김도형(1999):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 _____ (2002): “일본의 비관세조치와 한일 FTA,” 한일 FTA 정책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3a):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한일의 역할,” 『일본학보』, 55. 2.
- _____ (2003b):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한일 FTA 종합세미나, 한국무역협회.
- _____ (2004a): “80년대 이후의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미국측 입장,” 미발표 자료.
- _____ (2004b): “韓日FTA 이후의 산업내분업과 산업협력 가능성,” 『韓日經商論集』, 30.
- _____ (2007a): “엔 경제권과 아시아 공동통화의 가능성,” 『韓日經商論集』, 37.
- _____ (2007b): “韓日FTA 협상: 대립구도와 재협상 가능성,”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 한국국제경제학회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 _____ (2007c): “엔 경제권의 조건-논점 정리,” 계명대 일본학과 설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월 16일.
- 김양희·조병택(2002): 『韓日FTA와 日本의 流通障壁』,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韓日FTA의 産業別 影響과 대응책』,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アジア經濟研究所(2000):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
- 산업발전기획단(2002): 『2010 산업비전 산업강국의 길』, 서울, 산업자원부.
- 經濟産業省(2001): 『産業の中間投入に係る内外價格差調査』, 經濟産業省調査課,
<http://www.meti.go.jp/>.
- _____ (2002): 『平産13年度産業の中間投入に係る内外價格差調査』, 經濟産業省調査課.
- _____ (2005): 『通商白書 2005年版』.
- 經濟産業省通商政策局(2002): 『2002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財團法人經濟産業調査會.
- 大野健一·桜井宏二郎(1997): 『東アジアの開発経済学』, 有斐閣.

- 鈴木宣弘(2005a): “韓日FTA, 韓日中FTAの推進と農業,”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한일세미나, 8월.
- _____(2005b): 『FTAと食料—評價の論理と分析 組』, 筑波書房, 7월.
- _____(2005c): 『食料の海外依存と環境負荷 と 循環農業』, 筑波書房, 11월.
- 円の国際化推進研究会(2003): “円の国際化の推進 円の国際化推進研究会座長とりまとめ,” 日本財務省, 1월 23일.
- 財団法人産業研究所(2006): 『東アジアの産業連関及び貿易構造と我が国の経済構造変化に関する調査研究』.
- 財団法人通商産業調査会(1990): 『日米構造問題協議会 最終報告』, 財団法人通商産業調査会 9월 3일.
- 佐佐波楊子・浦田秀次郎・河井啓希(1996): 『内外價格差の経済學』, 東洋經濟新報社.
- 片岡剛士・久野 新(2003): “貿易保護のコスト試算,” *UFJ Institute Report*, 8, 2.
- 韓国貿易協會 貿易研究所(2002): 『日本の対韓非関税障壁現況』, 貿易研究報告書, 02-1-09.
- 韓日FTA産官学共同研究会(2003): 『最終報告書』 및 제4차 내부자료, 서울.
- Fukao, K. Ishido, H. Ito. K.(2003):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Discussion Paper Series A, no. 434,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
- KIEP(1999):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책』, 9월.
- KIEP・IDE(2000):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 5월.
- KIEP・TRI・IDE(2003): *The Patterns of Inter-Industry Trade with the Major Trade Partne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서울.
- Kim, Dohyung(2007): “On The Patterns of Intra Industry Trade and Industrial Cooperation with the Korea Japan FTA,” *ERINA REPOR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Japan.